2014·2015 국가소비자중심
2년연속 브랜드대상 수상
http://skypalace.iusell.co.kr

우방 아이유쉘
서대전역 스카이팰리스 | 입주자 모집공고 |

11월 13일(금) 대공개

- 이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.11.13.(금)입니다.(청약저축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)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38조의2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, "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기입기간"을 참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'청약가점제 , 가 적용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.11.13.(금) 현재 해당 대전광역시는 물론 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저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)도 청약 가능함.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.
- 투기 억제자 처벌 –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"주택법"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-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"공인중개사법"에 따라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■ 이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.11.13.(금)입니다.(청약저축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)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38조의2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, "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기입기간"을 참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'청약가점제 , 가 적용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.11.13.(금) 현재 해당 대전광역시는 물론 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저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)도 청약 가능함.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.

■ 투기 억제자 처벌 –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"주택법"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-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"공인중개사법"에 따라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,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일반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11.13.)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중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예외적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,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일반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11.13.)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중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예외적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
■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
-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비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「주택법」 제4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.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에 의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.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님.)
-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예외 : 상속, 이혼 등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.

Ⅰ.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5-1129호(2015.11.13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
■ 공급위치 :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73-1번지 외 2필지

■ 대지면적 : 4,595.18㎡(공동주택 : 4,044.1570㎡, 근린생활시설 : 551.0230㎡)

■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5층, 지상40층(지상1,2층은 근린생활시설) 2개동, 총2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■ 공급내역 : 전용면적 84㎡, 159㎡ [특별공급 95세대 포함(기관추천 특별공급 29세대, 다자녀 특별공급 29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)]

■ 공급대상 (단위: ㎡, 세대)

구분	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타입	공급세대수	주택형별 계약면적				세대별 대지지분	공급세대수						1층 우선배정
					세대별 공급 면적			기타공용면적	계	특별공급				특별공급 세대수	일반분양 세대수	
		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	일반(기관추천)	다자녀	신혼부부	노부모			
민영주택	2015001413-01	84.8600A	84A	146	84.8600	31.1420	116.0020	48.3250	164.3270	13.4920	14	14	14	4	46	100	4
	2015001413-02	84.8500B	84B	150	84.8500	30.2400	115.0900	48.3190	163.4090	13.4910	15	15	15	4	49	101	4
	2015001413-03	158.9300	159	2	158.9300	59.6840	218.6140	90.5060	309.1200	25.2690	–	–	–	–	–	2	–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(단위:㎡, 천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주택형 (타입)	동	라인	층	해당 세대수	공급금액			계약금		중도금				잔금 (입주지정일)
					대지비	건축비	합계	1차	2차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
								계약시	19.01.30.	16.05.10.	16.09.10.	17.01.10.	17.05.10.	17.09.10.	18.01.10.	
84.8600A (84A)	101 동	1,2 호	4~5	4	101,000	190,000	291,000	10,000	1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87,300
			6~9	8	101,000	199,000	300,000	10,000	2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90,000
			10~19	20	101,000	212,000	313,000	10,000	21,300	31,300	31,300	31,300	31,300	31,300	31,300	93,900
			20~29	20	101,000	221,000	322,000	10,000	22,200	32,200	32,200	32,200	32,200	32,200	32,200	96,600
			30~34	10	101,000	225,000	326,000	10,000	22,600	32,600	32,600	32,600	32,600	32,600	32,600	97,800
			35~39	10	101,000	228,000	329,000	10,000	2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98,700
	102 동	1,2 호	3~5	6	101,000	196,000	297,000	10,000	19,700	29,700	29,700	29,700	29,700	29,700	29,700	89,100
			6~9	8	101,000	206,000	307,000	10,000	2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91,800
			10~19	20	101,000	218,000	319,000	10,000	21,900	31,900	31,900	31,900	31,900	31,900	31,900	95,700
			20~29	20	101,000	228,000	329,000	10,000	2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32,900	98,700
			30~34	10	101,000	231,000	332,000	10,000	23,200	33,200	33,200	33,200	33,200	33,200	33,200	99,600
			35~39	10	101,000	234,000	335,000	10,000	23,500	33,500	33,500	33,500	33,500	33,500	33,500	100,500
	103 동	1,2 호	3~5	6	101,000	181,000	282,000	10,000	18,200	28,200	28,200	28,200	28,200	28,200	28,200	84,600
			6~9	8	101,000	190,000	291,000	10,000	1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29,100	87,300
			10~19	20	101,000	202,000	303,000	10,000	20,300	30,300	30,300	30,300	30,300	30,300	30,300	90,900
			20~29	20	101,000	211,000	312,000	10,000	21,200	31,200	31,200	31,200	31,200	31,200	31,200	93,600
			30~34	10	101,000	214,000	315,000	10,000	2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94,500
84.8500B (84B)			35~40	12	101,000	217,000	318,000	10,000	2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95,400
	104 동	1,2 호	3~5	6	101,000	184,000	285,000	10,000	18,500	28,500	28,500	28,500	28,500	28,500	28,500	85,500
			6~9	8	101,000	193,000	294,000	10,000	19,400	29,400	29,400	29,400	29,400	29,400	29,400	88,200
			10~19	20	101,000	205,000	306,000	10,000	2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91,800
			20~29	20	101,000	214,000	315,000	10,000	2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31,500	94,500
			30~34	10	101,000	217,000	318,000	10,000	2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31,800	95,400
			35~40	12	101,000	220,000	321,000	10,000	22,100	32,100	32,100	32,100	32,100	32,100	32,100	96,300
158.9300 (159)	101 동	1,2 호	40	1	189,000	780,000	969,000	20,000	7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290,700
	102 동	1,2 호	40	1	189,000	780,000	969,000	20,000	7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96,900	290,700

※ 분양금액은 공급금액(vat) + 0.300% 등 공급면적(vat) + 3.300% 중 선납할인액 상기 중도금 납부일 이후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임.

※ 중도금 납부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근린생활시설 기준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일(2015.11.13.)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(단, 이주대책대상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)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전광역시) 및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에 해당함.

■ 공동사업

- 2006.01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법 시행령이 기존5층이하→5~7층이하로 변경되어 주상복합아파트 분기테크를 변경되었으나 유상옵션과 청약신청 변경시점 이후.
- 상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해야 입주자 선정 및 동 · 호수 배정은 공증절차완료(예시 실시됨.)이후 입주자 확인 추첨에 의한 공개로 실시.
-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공사 제외금액이며 입주자 선정 및 동 · 호수 배정은 공증절차완료(예시 실시됨.)이후 입주자 확인 추첨에 의한 공개로 실시.
-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지분을 말하며,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지분은 제외함.
-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지분을 말하며,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지분은 제외함.
- 분양대금납부 관련 대출은 본인의 부적격 사유 발생시 대출이 불가하오니 중도금 납부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양대금납부 관련 대출은 본인의 부적격 사유 발생시 대출이 불가하오니 중도금 납부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음.
- 본 아파트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음.
- 청약통장 사용기준 : 청약저축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예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부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종합저축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청약부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
- 청약통장 사용기준 : 청약저축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예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부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종합저축 : 납입인정금액 기준 / 청약부금 : 납입인정금액 기준
-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
-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
-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됨.
-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됨.
-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
-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
-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됨.
-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됨.
-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/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: 청약저축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 / 예금 · 부금 · 종합저축 · 청약부금 :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